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75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타	㈜위노바

2. 조치내용

□ **(금감원 원안)** ㈜위노바 증권발행제한 6월

□ **(원안의결)** ㈜위노바 증권발행제한 6월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

○ 회사는 2021.8.9.~2021.8.10. 기간중 보통주 6.3억원(과거 1년간 모집액 12.3억원)을 모집*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*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행사실을 게시하고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

나. 근거법규

□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7항, 제119조 제1항, 제132조 제1호,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, 제1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, 제138조 제1호